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컨소시엄은 호서대학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와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참여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컨소시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직무)** 본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의 사업고시에 의거 산·학·연 공동체의 애로기술을 본 대학의 기술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과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 4 조 (사업)** 본 컨소시엄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담 교수의 지정 및 개발대상 과제의 도출 등 참여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초사업
 2. 참여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
 3. 워크샵 및 세미나(연구발표회)개최
 4. 기타 필요한 사업
- 제 5 조 (소재지)** 본 컨소시엄은 호서대학교 산학협동연구소 내에 둔다.
- 제 6 조 (규정의 변경)** 본 컨소시엄 규정의 변경 및 해산 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2 장 조직 및 임원

- 제 7 조 (구성)** 본 컨소시엄은 본 대학의 이공계 및 디자인학부 교수들과 10개 이상의 지방 중소기업으로 구성된다.
- 제 8 조 (조직)** 본 컨소시엄은 제3조 및 제4조의 직무와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에 다음과 같은 분야의 조직을 두고 그 사업을 수행하며, 본 대학의 행정부서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한다.
1. 총무
 2. 기획 및 홍보
 3. 재무
 4. 편집
- 제 9 조 (임원)** 본 컨소시엄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총괄책임자(산학협동연구소장)
 2. 운영위원장(산학협동연구소장)
 3. 제8조의 각 분야별 사업 간사 : 4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
 5. 운영위원 : 약간 명

제 3 장 총 회

- 제 10 조 (구성)** ① 총회는 컨소시엄 관련 각 위원 및 참여 연구책임교수로 구성되며, 총괄책임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1조 (기능) ① 총회는 컨소시엄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총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12조 (운영위원회) 컨소시엄의 운영에 관한 일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본 대학 산학협동연구소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제9조 제3호의 분야별 간사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컨소시엄의 모든 업무(사업 및 재무관리)를 관장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2. 참여 사업과제 선정 및 조정
3.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예산 및 결산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일체

제 5 장 자 문 위 원 회

제15조 (자문위원회) 컨소시엄의 제반 운영 및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에 자문역할을 한다.

제16조 (구성 및 임원) 본 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임원은 교무처장, 사무처장, 기획처장, 참여기업대표로 구성한다.(개정 2015. 5. 1)

제 6 장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수행

제17조 (컨소시엄 참여교수) ① 참여교수의 선정과 제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컨소시엄의 참여자격은 본 대학 이공계 및 디자인학부의 전임교원(명예교수 포함)으로 한다.
2. 참여교수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되 전년도 수행과제의 연속과제를 우선으로 한다.

② 과제 수행기간 중 참여교수의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업무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추진규정을 설정한다.

1. 재직 중 유고시 공동연구원이 책임을 지고 연구과제를 계속할 의향과 능력이 있을 시 당해 연도 사업을 계속 집행하여 산학협동연구소의 평가결과에 따른다. 단, 공동연구원이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의향이 없을 경우 과제의 수행을 중단하고, 공동연구원이 기수령 연구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제증빙 자료 및 중단 시까지의 연구현황보고서와 결과 시설물 일

체를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제 책임연구원이 국내에서 이직 할 경우 공동연구원이 과제 책임연구원이 되며, 이직하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공동연구원으로 계속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 단, 공동연구원이 과제를 책임지고 수행할 의향이 없을 경우 과제의 수행을 중단한다.
 3. 영구출국의 경우 제1호(재직 중 유고시)와 같이 처리하며, 3개월 미만의 방문일 경우에는 방문기간 동안만 공동연구원 중 1인에게 책임연구원의 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장기방문일 경우 출국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4.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책임연구원으로서 적절한 연구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컨소시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이를 총괄책임자에게 서면 보고한다. 위의 2, 3, 4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각 과제 책임연구원은 면책되기 전에 기 수령한 연구비에 대한 지출내역과 제증빙 자료 및 그때까지의 연구현황보고서와 결과 시설물 일체를 컨소시엄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참여교수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참여교수는 참여기업과 접촉하여 2인 이상의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지정 업체 연구책임자를 선임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참여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3. 당해 연도 사업개시 전 50일 이내에 연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지정된 개별 기업과의 기초사업 추진요약서
 - 나. 세부과제연구 개발계획서
 - 다. 연구비 신청서
 4. 당해 연도 사업종료 50일 전까지 과제별로 다음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개별 기업과의 상호토론, 현장진단, 과제도출, 연구개발 착수 및 추진성과, 사업비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된 요약 보고서
 - 나. 과제별 연구개발 요약 보고서
 - 다. 시제품, 상품의 견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서 사본
 - 라. 사업화 가능성 및 상품성에 대한 참여기업 의견서
 5. 연구결과의 평가는 참여교수별 자체평가 후 본 사업의 주체인 정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른다.

제18조 (컨소시엄 참여기업) ① 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의 참여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조업으로 사업등록 되어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단, 식품제조업과 정보처리업도 포함한다.
 2. 컨소시엄의 가입 결정은 호서대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협약한다.
- ② 참여 중소기업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 컨소시엄의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공통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입 후 담당 지도교수와 협의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며, 본 컨소시엄과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협력을 체결한다. 이때 기본사업비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경우 이를 개별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기업은 세부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공동 노력한다.
 4. 개별기업이 본 컨소시엄의 연구개발의 결과를 대외 홍보 할 시에는 호서대학교 지원 컨소시엄의 연구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컨소시엄 구성과 탈퇴) ① 컨소시엄 참여 업체 수는 10개 업체 이상으로 유지하되, 당해

연도의 업체수의 상한선은 해당년도의 사업 예산범위에서 참여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한 선으로 제한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컨소시엄에서 탈퇴한다.

1. 당해연도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에 대한 참가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을 경우
2. 협약에 의한 공동부담금 또는 개별부담금을 지정납기일로부터 4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기업의 도산 등)

제20조 (연구수행) ① 연구과제의 착수일은 중소기업청과 호서대학교의 협약 체결일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제21조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는 협약 당시의 연구과제 계획서에 의한 연구비를 항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과제 수행이외의 목적이나 또는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항목별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목별 신청연구비의 10% 이내에서 연구협약 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간전용 시 부득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산학협동연구소장을 경유하여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첨부예산관리요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정 및 예·결산

제22조 (재정) 본 컨소시엄의 재정은 다음의 경비로 충당한다.

1. 참여기업의 공동부담금 및 개별연구비 부담금
2. 충청남도의 지역컨소시엄 지원금
3. 중소기업청의 지역컨소시엄 지원금
4. 본교의 운영지원금
5.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

제23조 (사업계획) 본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충청남도 및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 컨소시엄은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의 회계연도와 일치시킨다.

제25조 (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장은 매년 예산, 결산서를 작성한다.

제26조 (해산 후 재산귀속) 본 컨소시엄이 해산 할 경우 그 재산, 권리, 의무는 호서대학교에 귀속된다.

제 8 장 보 칙

제27조 (운영요강) 본 컨소시엄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해서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관련 법령(1993년 9월)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권소사업 규정 4-1-1-4~5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